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2238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예슬, 최건, 이동현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5. 11.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특허청 2020. 10. 29.접수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식회사 C에게 특허청 2020. 5. 11. 접수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합니다)과 사이에, C이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한 동안 F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F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C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기술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2) 원고는 C이 2019. 10. 18. F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보증원금은 30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22. 10. 18.까지로 정하는 신용보증(보증번호 G)을 하였다.

(3) C에 대하여 F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고(2020. 4. 29. 신용관리정보등록 보증사고), 이에 원고는 2021. 3.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09,345,3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이 사건 보증으로 인한 보증료 중 대위변제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의 1,200,0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일부 충당하였으므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대위변제금 잔액은 308,145,330원(= 대위변제금 309,345,330원 - 회수금 1,200,000원)이고, 그 외에 추가보증료 2,056,430원이 존재한다.

나. 처분행위

C은 2020. 5.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에게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하여 특허청 2020. 5. 11. 접수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다시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는 특허청 2020. 10. 29.접수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각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의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여 채권이 발행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한 것이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과 원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사고는 2020. 4. 29.에 발생하였던 사실, C은 그로부터 약 12일 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상표권을 제외한 적극재산의 규모보다 소극재산의 규모가 더 큰 상태에서 이 사건 상표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함으로써 C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은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주문 1의 다.항 기재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주문 1의 나.항 기재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안홍준

별지

1. 상표등록번호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4년 6월 12일

상표류구분수

2

상표권의 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등록

존속기간 만료일

2024년 8월 8일

지정상품

제18류 : 가방, 가죽제 서류가방, 지갑, 핸드백

제25류 : 겹옷, 드레스, 신사복, 원피스, 투피스,

아동복 등.

